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4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7가합272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

5. [redacted]시

6. [redacted]시

변 론 종 결 2018. 3. 21.

판 결 선 고 2018. 4. 4.

주 문

1. [redacted]공사가 2017. 5. 22.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로 공탁한 237,121,5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B은 2003. 1. 21. 피고 C에게 [redacted]시 E 답 2,68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에 매도하되 특약사항으로 "위 토지 지상 건축물도 포함한다"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C는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등(이하 '이 사건 지장물'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'F'이라는 상호의 콩나물 재배 및 판매업을 하였고,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매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 B과 그의 처 G(이하 '피고 B 등'이라 한다)로부터 차용금 채무 3,882,947,513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 및 [redacted]공사에 대한 위 지장물 보상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보상금 채권'이라 한다)을 양수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등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촉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0. 4. 30. '1. 피고들(피고 B 등)은 [redacted]공사 및 [redacted]시장에게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 2. 피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'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(이하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'이라 한다)이 이루어져, 그 무렵 확정되었다(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0가합2294호).

라.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는 2014. 3. 21. [redacted]공사에 '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니 위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'는 내용과 위 화해권고결정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, 그 무렵 [redacted]공사에 도달하였다.

마. 한편 피고 C, D,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는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.

채권자	채무자	제3채무자	근거	제3채무자 도달일자	청구금액(원)
피고 C	피고 B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타채10163)	2014. 12. 19.	2,576,785,633
피고 D	피고 B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5타채1373)	2015. 2. 27.	150,000,000
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	피고 B	[redacted]공사	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5타채1448)	2015. 3. 4.	49,250,629
피고 [redacted]시	피고 B		채권압류	2015. 10. 20.	9,979,780
피고 [redacted]시	피고 B		채권압류	2015. 11. 11.	7,010,290

바. [redacted]공사는 [redacted]지식정보타운 공공[redacted]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에 대하여 2017. 5. 22. '피고 B과 C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고,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, 피고 B에 대한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점'을 공탁원인으로 하고, 원고와 피고 B,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237,121,590원을 혼합공탁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, 이하 '이 사건 공탁금'이라 한다)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7호증의 각 기재,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인신문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B, D, 주식회사 [redacted]주유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채권을 양수하였고,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보다 먼저 [redacted]공사에 도달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한은 원고에게 있다.

나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3. 피고 C,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 여부

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,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. 다만,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,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3다43490 판결).

살피건대, 원고가 [redacted]공사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인 피고 B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채권양도통지는 원래 채권의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,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밝혀져 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[redacted]공사는 양도인인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, 피고 B은 [redacted]공사에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점 등 위 통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, [redacted]공사로서는 원고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,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위 통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.

2) 공탁금출급권의 귀속 여부

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다72644 판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살피건대,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보다 먼저 [redacted]공사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 이 사건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각 압류명령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,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·제출하여야 하므로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다84076 판결), 원고는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나.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미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,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취득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,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다툰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,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 중 지상 건축물 부분은 2천만 원인 반면,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은 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 대한 것으로 액수가 2억 3,700여만 원에 달하는 사실,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04. 1. 17.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와 콩나물 살수 기계 등이 소실되었으며 피고 B은 이를 재건축한 사실, ③ 피고 C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1가단5972호),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피고 B 등에게 있음을 전제로 철거를 주장하여 인용되었던 사실, ④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B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, 위 대여금에 대한 정산 및 지불각서, 채무 변제에 갈음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가 아닌 피고 C 소유라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기하여 위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가 같은 집행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[redacted]공사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재판장 판사 손동환

판사 강하영

판사 신세희